

동두천시 교통약자 콜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

의 안 번 호	5-37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 · 09 ·

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요구이유

- 『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』, 『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』 및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에 근거하여 교통약자 콜벤을 구입하여,
-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, 『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
 - 가.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(조례 제6조)
 - 나. 위원회 구성(안)
 - 당연직 : 부시장, 기획감사실장, 사회복지과장, 교통행정과장
 - 위촉직 : 시의원1명, 변호사1명, 법무사1명, 여성단체1명, 언론인1명
- 수탁기관 선정
 - 가. 자격
 - 관내에 주소를 두고, 사회봉사활동 등의 실적이 있고,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단체
 - 나. 선정방법

- 공개모집으로 접수된 자격있는 단체의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결정다. 위원회 결정 후 처리사항

-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,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함
- 위탁 사항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

○ 위·수탁 협약체결 주요내용

가. 협약체결

- 협약서에는 수탁기관(受託機關, 이하 수탁기관)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관, 예산 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

나. 위탁기간 및 재위탁 처리금지

- 3년 이내로 하되, 연장할 수 있으며,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다.

다. 사무편람

-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과정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.

라. 처리상황의 감사

-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여야하고, 감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○ 시의회 동의 후 향후계획

가.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(10월 말)

나.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(10월 말까지)

다. 수탁기관 선정 후 위수탁계약 체결(11월 중순까지)